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30
----------	-----

2025. 4. 30.(수)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최정훈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4월 22일

-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최정훈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절차를 개선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임 법령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명 오기를 정정함(안 제1조 및 제3조)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에 도의회 추천받은 사람을 포함함

(안 제4조제3항)

-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공유재산 취득 시 취득대상지 선정 근거를 명시함
(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신복순)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에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기존 “9명”에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확대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 중 충청북도의회 추천을 받은 사람을 2명 포함하도록 하며,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취득대상지의 선정 근거를 첨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안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유재산심의회에 위원 수에 관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정하고 있고, 본 조례는 그 수를 “9명”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
 - 공유재산심의회에 형식적 운영을 막고,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수를 최소 6명에서 최대 11명까지 확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 타 시도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수 규정

시도	규정	시도	규정
서울	없음	경기	7명 이상 15명 이하
부산	7명 이상 15명 이하	강원	15명 이내
대구	7명 이상 15명 이하	충남	15명 이하
인천	없음	전북	없음
광주	없음	전남	7명 이상 15명 이하
대전	없음	경북	7명 이상 15명 이하
울산	7명 이상 15명 이내	경남	7명 이상 15명 이하
세종	7명 이상 15명 이하	제주	없음

*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법에 따라 7명 이상 15명 이하

○ 안 제12조제4항과 관련하여,

- 법 제10조의2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제출 시기, 지방의회 의결 및 취소·변경 시 절차 등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 제7조는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변경계획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 받아야 하는 경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영 제7조제2항은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 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등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조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안 제12조제4항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려는 대상지를 선정한 근거를 첨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다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에 안 제1조는 위임조례인 본 조례의 상위법률을 분명히 하기 위해

- 목적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고,
- 안 제3조제1항 및 안 제5조제2항제1호는 법령명 오기를 정하려는 것이며,
 - 안 제12조제1항은 안 제4조제1항 후단이 신설됨에 따라 앞선 조문에서 약칭을 하게 됨에 따라 기존 약칭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 안 제40조제1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에 따라 법령명 표기 방식을 정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음(p.242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9명”을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간위원 5명”을 “민간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2명은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대상지 선정 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호 중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개정) 규정은 2025년 11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u>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u>」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 -----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u>」-----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북도 <u>공유재산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u></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 ----- ----- ----- ----- <u>10명</u> <u>이상 15명 이하</u>----- ----- -----</p>

취득·처분

2. 3. (생략)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충청북도의회 (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를 말

2. 3.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 도의회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대상지 선정 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1. -----
